

제 호

농지처분의무통지서

1. 성명(명칭)							
2.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				
3. 주소							
4. 처분대상 농지 및 그 면적(아래 농지 [] 전체 [] 중 m ²)							
소 재 지				지 번	지 목	면적(m ²)	비 고
시·도	시·군	읍·면	리·동				
합 계							
5. 처분의무 발생사유							
6.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				년 월 일 ~ 년 월 일 (1년)			

귀하는 「농지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소유농지 중 처분대상농지를 처분의무기간에 처분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이 통지서에 따라 처분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농지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.
-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,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